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등의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청장이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종류 및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재원 등을 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을 추가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 ~ 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조의10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제12조제1항 전단 중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담당자성명	전화
	이메일주소	팩스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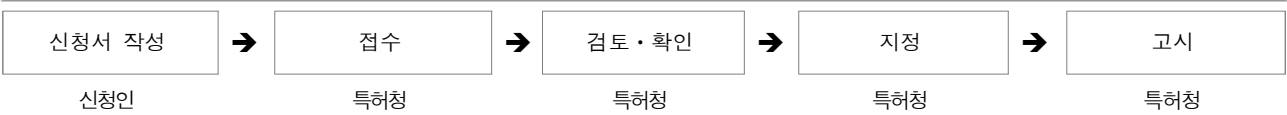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9. (생략)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서-----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9.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별
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③ ~ ⑥ (생략)

<신설>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신 설>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8498